“집단발포 전 대대장들이 상부에 발포권 달라 아우성쳤다”

5·18 계엄군의 고백

<5> 집단발포 현장 초급 지휘관

명령 없이 발포 불가…군 자위권 차원 우발적 사격 주장과 배치

공수여단만의 무전체계 갖춰…최웅→정호용→전두환 연결 가능성

전두환 전 대통령 등 5·18 유혈진압 관련 핵심 인물들은 그동안 검찰조사 및 재판, 국회 청문회 등에서 일관되게 “(전남도청 앞 집단발포 과정에서) 발포명령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왔다. 그러면서 “시위 군중과 공수특전여단 장병과의 격한 대치 속에 자위권 성격의 발포가 있었다”는 입장을 취했다.

그런데 1980년 5월 21일 낮 집단발포의 현장에 있었던 계엄군 초급 지휘관은 20일 광주일보와 인터뷰에서 “도청 앞 집단발포가 있기 전 대대장들이 무전기에 대고 울며불며 발포권(발포명령)을 달라고 했다. 우리 대대장뿐 아니라 다른 대대장들도 상부에 발포권을 달라고 아우성이었다”며 당시 군 핵심들의 주장과 반대되는 증언을 내놨다.

도청 앞 집단발포 현장에는 대대장(중령)들이 가장 계급이 높은 지휘관이었으며, 이들이 상부에 발포명령 하달을 촉구했다는 내부 증언은 이번이 처음이다.

5·18당시 특전사 11공수 특전여단 63대대 소속 이모(61·사진) 전 중위는 “40년 가까이 흘렀지만 대대장들이 고함도 치고 울먹이기도 하면서 상부에 발포권을 달라고 했던 순간만큼은 기억이 또렷하다”며 “군사독재 시절이라고 해도 군(軍)이 명령 없이 시민에게 사격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물며 그때는 집단발포로 인명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컸던 순간이었다”고 강조했다.

이 전 중위는 그러면서 “시위가 격화되면서 APC장갑차가 도청 방면으로 후진하다 몇몇 장병이 오징어포처럼 눌려 죽고 그때부터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갔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그는 “대대장들의 발포권 요청도 그때쯤이었다. 이후 얼마 안 돼 대대본부 장병들이 부대원들 사이를 돌면서 실탄을 분배했다. 그러고선 대치 중이던 시위대 쪽에서 시위대가 몰던 버스가 금남로에서 우리가 있던 도청 방면으로 달려드는 순간 이곳저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군의 발포가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이 전 중위는 “다만 대대장들이 발포권을 달라고 집요하게 요청했던 순간은 기억하지만, 실제로 발포권이 승인됐는지 여부는 알지 못한다”면서도 “그러나 발포권 요청 이후 조직적인 실탄분배가 있었고, 명령없는 발포는 있을 수 없다는 점에서 발포권이 하달됐다고 보는 게 맞지 않겠냐”라고 말했다.

이 전 중위의 설명대로라면, 이날 낮 도청 앞 금남로에서 수천의 시위 군중과 대치 중이었던 계엄군은 시위가 격화되는 과정에서 상부에 발포명령 하달을 지속적으로 요청했고 그 후 조직적인 실탄 분배 및 사격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는 자위권 차원에서의 일부 군인들의 우발적 사격이 있었다는 군의 기존 주장과는 배치되는 증언이어서 주목된다.

특히 나경택 전 기자(광주일보 전신이었던 옛 전남매일 사진부 소속)의 집단발포 증언과도 맞물려 주목된다. 그는 2006년 발간된 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위 종합보고서에서 “1980년 5월 21일 낮 12시30분경 시위대에 의해 도청 앞까지 밀린 공수부대원 가운데 한 대위가 통신병에게 ‘발포명령이 떨어졌느냐’고 재촉하는 사이, ‘발포명령이 떨어졌다’는 통신병의 말과 함께 시민을 향한 발포가 시작됐다”고 증언했다.

이 전 중위가 목격해 전한 발포명령 요청의 주체는 그의 대대장이었던 조창구 중령을 비롯한 안부웅 61대대장, 이제원 62대대장이다.

국방부 과거사위 보고서는 “상황이 다급해졌을 때 안부웅 61대대장은 군법회의에 회부되는 한이 있더라도 발포하자고 주장했고, 이제원 62대대장은 반대했다”고 적고 있다. 이 전 중위의 증언과 내용이 일부 다르나 발포여부를 두고 대대장들간 논의가 긴박하게 이뤄졌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들이 발포명령 하달을 촉구했던 ‘상부’는 당시 공수여단이 자신들만의 무전체계를 갖췄고(신순용 당시 소령·3공수여단 11대대), 공식적으로 공수여단을 지휘하는 2군사령부의 20일 밤 작전지침(작상전 제444호·실탄통제 및 발포금지, 국방부 과거사위 보고서)이 준수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웅 11여단장→정호용 특전사령관→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으로 연결됐을 가능성이 커보인다.

이 전 중위는 “당시 불상사가 일어날 것 같아 (지휘부에서)도청 철수명령을 내려주길 바랐지만 입 밖으로 꺼낼 순 없었다. 철수명령이 내려졌으면 발포도, 시민 희생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게 전두환이 저지른 것 아니냐, ‘광주사태’의 전모가 밝혀져 전두환이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올라야한다. 군 내부에서보다 많은 증언이 터져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전일빌딩 헬기 기관총 사격 봤다”

시민군 지용씨 첫 증언…“‘제73광수’ 지목한 지만원 고소할 것”

1980년 5월 22~23일께 전일빌딩을 향해 헬기에서 기관총이 발사되는 모습을 봤다는 증언이 나왔다.

그동안 국과수와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가 전일빌딩 헬기 총탄흔이 M16 소총이나, M60기관총에서 발사된 것으로 추정한 적은 있으나, 기관총 발사장면을 봤다는 목격자는 처음이다.

20일 5·18기념문화센터에 따르면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으로 활동했던 지용(76)씨는 지난 19일 센터를 방문해 이같은 사실을 알렸다.

지씨는 이날 광주일보와의 통화에서 “적십자병원에서 부상자를 살펴보고 나오던 중 동구 불로동 다리(현 부동교) 상공에 헬기가 떠있고 전일빌딩 쪽으로 기관총 수십 발을 쏘는 모습을 목격했다”며 “도청 앞 집단발포 이후인 22일이나 23일이다. 정확한 시간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헬기 사격을 목격한 장소는 전일빌딩으로부터 600m가량 떨어진 지점이었다고 지씨는 기억했다.

지씨는 38년이 흐른 현재 헬기 사격 목격담을 증언한 이유에 대해 “그동안 5·18을 생각하면 미안하기도 하고 정권에 잘못 보이면 피해를 입을까 함구하고 있었다”며 “최근 (내가) 지만원에 의해 북한 특수군으로 지목된 것을 뒤늦게 알고 사실을 밝히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씨는 1980년 5월 18일 공수대원들의 만행을 보고 광주항쟁에 참여한 시민군이다.

지씨는 박남선 상황실장 등과 함께 총기를 들고 외곽순찰과 도청 경계 업무를 맡던 중 5월 26일 밤 옷을 갈아입기 위해 집에 들렀다 계엄군의 진압작전 때문에 도청으로 돌아가지 못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지만원씨는 이러한 지씨를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북한 특수군을 뜻하는 ‘제73광수’로 지목했다.

지씨는 “지만원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할 예정”이라며 “오는 23일 5·18기념문화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5·18 경험담 등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광주 YMCA ‘전두환 회고록’ 불법 배포 신고센터 운영

광주YMCA는 “지난 15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출판 및 배포 금지 가처분이 결정 〈광주일보 5월16일자 6면〉이 내려진 전두환 회고록 1권 수정본의 출판·배포 불법행위에 대해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YMCA는 법원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회고록을 배포하는 행위가 이뤄진다면 신고를 접수해 법적 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신고센터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전국 67개 YMCA에서 공동 운영한다.

대상은 재출간된 수정본으로, 법원이 추가 삭제판단을 내린 내용을 그대로 수록하고 있는 책이다. 책의 해당 페이지는 380, 381, 382, 383, 384, 390, 391, 394, 395, 399, 403, 404, 407, 423, 431, 434, 472, 485, 494, 495, 511, 518, 519, 520, 521, 522쪽이다.

수정되지 않은 회고록을 서점 등에서 본 사람은 전화(062-234-0074)로 신고하면 된다. 한편, 광주지법은 ‘교도소 습격설’ 등을 적시하고 있는 전두환 회고록 제1권 수정본에 대해 5·18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한 부분 36곳을 삭제하지 않고서는 출판·발행·인쇄·복제·판매·배포 및 광고를 할 수 없도록 결정했다. 전 전 대통령은 이를 어기면 1회당 500만원을 5월 단체에 내야 한다.

/김용희기자 kimyh@

그날처럼…‘민주기사의 날’ 차량 시위 재연

20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 ‘민주기사의 날’ 행사에 참여한 택시기사들이 광주시 북구 무등경기장에서 동구 금남로 옛 전남도청까지 1980년 5월 차량 시위를 재연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장휘국 광주교육감, 선거비용 반환소송 2심 승소

법원 “선관위, 반환명령 취소”

법원이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에게 내려진 선거보전비용 반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광주고법 행정1부(이창한 부장판사)는 장 교육감이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선거비용 미보전사유 발견 통지 및 반환명령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2016년 1심 재판부는 “선관위가 2015년 7월 장 교육감을 상대로 한 선거비용 반환명령 1억3000여만원 중 선거비용 허위보고·청구액은 당시 서버운영시스템 3대에 대한 보전비용인 813만원만 인정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선관위가 장 교육감을 상대로 반환명령을 청구한 1억3000여만원을 모두 취소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정치자금법 40조(회계보고) 규정에 따라 선관위에 제출한 회계보고서에 허위로 보고된 비용이 없다. 원고가 보전받은 선거비용 중 공직선거법 제122조(선거비용의 보전 등)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없다”고 판시했다.

광주시 선관위는 장 교육감의 선거 홍보 대행사가 허위 서류를 작성, 보전 대상이 아닌 선거비용을 포함해 1억3000여만원을 허위 청구했다며 이를 반환하라고 했다. 이에 대해 장 교육감은 홍보 업무를 모두 대행사가 처리했고 업무처리 과정을 알지 못했다며 반환명령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목 맨 채 발견된 중학생 중태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중학생이 쓰러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0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8시 24분께 광주시 서구 금호동 한 아파트에서 A(13)군이 자신이 살던 아파트 계단의 난간에 목을 맨 채 발견됐다.

의식이 없었던 A군은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중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의 부모는 경찰에서 “학교 폭력이 의심스럽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남구 소재의 한 중학교를 다니던 A군의 학교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중이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주차공간 2개 차지한 외제차 괘씸” 차량 흠집 낸 70대 노인

쌍나팔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공간 2개를 차지한 고급 외제 승용차의 문을 열쇠로 긁은 70대 노인이 경찰서행.

○…20일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유모(75)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3시 10분께 광주시 동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선 2개에 걸쳐 주차된 한모(69)씨의 벤츠차량 운전석 문을 열쇠로 긁어 길이 30㎝ 정도 흠집을 내는 등 1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혔다는 것

○…CC-TV 등을 통해 경찰에 붙잡힌 유씨는 “고급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주차선 2개를 물고 주차를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것이 괘씸해 순간 화가 났다”며 선처를 호소.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7계>

※QR코드:법원경매정보 웹으로 접속됩니다.

사건번호	매각물건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고
[아파트]					
2017타경 12827	1	순천시 도장길50, 205동 14층 1401호 [연향동,호반리젠시빌] 82.601㎡	아파트	172,000,000 172,000,000	
2018타경 623	1	광양시 광양읍 호북길25-0, 102동 3층 305호 [칠성아파트] 46.74㎡	아파트	42,000,000 42,000,000	
2018타경 50079	1	순천시 하풍1길1, 가동 4층 405호 [풍덕동,삼산아파트] 74.75㎡[오금자지분3/9전부,김종숙,김윤수지분각2/9전부]	아파트	66,888,888 66,888,888	공유자우선매수권 행사1회로제한
[단독주택,다가구주택]					
2018타경 135	1	고흥군 포두면 옥강리 233 377㎡ 제시외 창고 등 118.2㎡	대	69,524,000 69,524,000	일괄매각.제시외 건물포함.제시외 건물중일부는인접 지타인소유토지지 상걸쳐있음
		고흥군 포두면 우산길 22 48.9㎡[일부증개축하여현황59.3㎡,일부가인접지타인소유토지지상에걸쳐있음]	단독주택		
[대지/임야/전답]					
2017타경 9371	1	구례군 간전면 금산리 497 655㎡	대	6,746,500 6,746,500	현황주거나지.수목포함
	2	순천시 황전면 회룡리 산11 5058㎡	임야	10,116,000 10,116,000	지적경계측량요
2017타경 11961	1	여수시 율촌면 가장리 산252-1 2114㎡	임야	14,163,800 14,163,800	
	2	동소 산252-2 7458㎡	임야	49,968,600 49,968,600	분묘소재
2017타경 12940	1	광양시 광양읍 목성리 713-1 245㎡	대	114,150,000 114,150,000	수목포함.제시외 건물매각제외
2018타경 135	2	고흥군 포두면 옥강리 272 2354㎡	전	35,596,000 35,596,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수목포함

사건번호	물건번호	매각물건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고
2018타경 258	1	순천시 와룡동 20-1 1960㎡	답	256,938,000 256,938,000	일괄매각.농지취득자격증명요.수목제외
		동소 21-1 2539㎡	답		
		동소 21-3 539㎡	답		
2018타경 50932	1	여수시 율촌면 반월리 산52 6843㎡	임야	30,683,700 30,683,700	일부구분지상권 설정있음
[상가/오피스텔,근린시설]					
2017타경 2707 2018타경 3844 [중복]	1	여수시 무선8길16, 1동 7층 706호 43.70㎡	오피스텔	97,000,000 97,000,000	현황오피스텔
	2	동소16, 1동 8층 803호 49.78㎡	오피스텔	112,000,000 112,000,000	현황오피스텔
	3	동소16, 1동 8층 807호 51.68㎡	오피스텔	115,000,000 115,000,000	현황오피스텔
	4	동소16, 1동 9층 904호 44.08㎡	오피스텔	115,000,000 115,000,000	현황오피스텔
	5	동소16, 1동 9층 905호 43.70㎡	오피스텔	99,600,000 99,600,000	현황오피스텔
[자동차,중기]					
2018타경 913	1	사용본거지:여수시 성산6길 27-9 [화장동 886-2] 등록번호:전남06마2133 기종:덤프트럭 연식:2016	건설기계	160,000,000 160,000,000	보관:순천시충효로25[덕암동]이수자동차매매상사
2018타경 1695	1	사용본거지:순천시 장평4길 50 [풍덕동] 등록번호:35오6827 차명:phaeton 3.0 TDI 연식:2008	자동차	10,000,000 10,000,000	보관:순천시충효로25[덕암동]이수자동차매매상사
[기타]					
2018타경 50284	1	여수시 율촌면 여동리 353-5 5614.3㎡	공장용지	2,095,594,900 2,095,594,900	일괄매각.제시외 가동중단된기계기구와비닐하우스및 컨테이너창고제외
		여수시 율촌면 율촌산단2로 203-72 1층1,102.8㎡ 2층53.04㎡	공장		

● 공고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매각조건
①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허가 될 때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배당시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② 공유자의 우선매수권[민사집행법 제140조] 행사에 따른 매수신고가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 그 공유자는 그 이후 해당 부동산의 매각에서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매각기일 : 2018. 6. 4. [월] 10:00
3. 매각결정기일 : 2018. 6. 11. [월] 16:00
4. 매각장소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08호경매법정
5. 매각방법
① 입찰법정에 비치된 기일입찰표에 사건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액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보증금을 함께 입찰봉투에 넣어 입찰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매수신청의 방법으로는 최저매각가격의 1할[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 또는 현금을 준비하거나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일명 보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자목록에 각자의 지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봉투의 투입이 완료되면 곧바로 개찰을 실시하여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자들만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합니다.
④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인들의 매수신청보증금은 입찰절차가 종결되는 즉시 반환합니다.
6. 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에 대하여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금지급기한은 통상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됩니다.
② 지정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매각을 실시합니다. 다만, 재매각기일로 지정된 날의 3일전까지 종전 매수인이 매각대금 및 지연이자, 비용을 납부하면 대금납부로서 유효하며, 따라서 재매각은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7. 소유권이전 및 인도
①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저당권, 가압류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및 저당권이나 가압류의 말소등기를 위해서는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후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등록세영수필통지서를 첨부하고,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를 기재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위 등기를 촉탁하여 줍니다.
②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소유자 또는 대항력없는 부동산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면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주의사항
① 매각된 주택 또는 상가건물에 최선순위의 저당권 등이 설정된 날짜보다 먼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나, 사업자등록신청을 마친 임차인이 있을 때에는 그 임차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② 매각기일 1주일 전부터 매각물건 명세서,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를 우리법원 민사집행[신청]과에서 전자통신매체나 비치된 출력물로 열람할 수 있으므로 미리 필요한 정보를 얻으신 후 입찰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③ 특별매각조건의 내용은 매각물건명세서의 열람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법정에 나오실 때에는 입찰표의 기재 및 입찰보증금의 반환에 필요하오니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오시기 바라며, 타인의 대리인으로 입찰하려고 하는 사람은 인감증명을 첨부한 위임장을 반드시 입찰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소유권이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요구되는 농지의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된 후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매각이 허가됩니다. 단,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음이 소명된 경우에는 매각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⑥ 공고된 물건중에 매각기일 전에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집행이 취소·정지된 경우, 또는 매각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없이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⑦ 신문에 공고되는 물건은 최초의 매각기일에 해당되는 물건이며, 속행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문공고를 하지 않으므로 우리법원 게시판의 공고나 법원에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⑧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매각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매수신청인이 제출한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합니다.
매각기일 공고의 요지는 대한민국 법원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 : http://www.courtauction.go.kr[경매공고 → 매각공고 선택]
※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공고내용의의 열람 가능한 정보는 법률상 제공하도록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을 국민편의를 위하여 따로 제공한 것으로서, 혹시 그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매각불허가 신청이나 항고, 대금감액신청이나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관심있는 물건에 관하여는 반드시 법원에 나오셔서 게시된 매각기일의 공고나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직접 확인하신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018. 5.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사법보좌관 전계수